
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

2025. 12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년 10월 2일, 정부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16차 전체회의(2025.11.17.) 상정/제안설명/검토보고/대체토론/소
위원회

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(2025.11.24.) 상정/축조심사/의
결(원안가결)

제17차 전체회의(2025.11.24.) 상정/소위심사보고/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정부)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임명현)

개정안은 양자분야 인력양성 사업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하여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특이사항 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최형두위원)

원안의결함.

6. 심사결과

원안의결.

7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체계·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.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 호
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호 중 “학생”을 “학생 및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인력 양성사업의 지원)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 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제21조(인력 양성사업의 지원) 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초 · 중등교육과정에 있는 <u>학생</u> 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과학기술 관련 교육	3. ----- <u>학</u> <u>생 및 「학교 밖 청소년 지</u> <u>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</u> <u>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</u> 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